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예 비 군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서 욱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동원사단 등 동원위주부대는 전시 임무수행을 위해 동원준비태세 향상 및 동원이후 조기 전투력발휘 여건 보장이 절실하나, 연간 2박3일의 동원훈련만으로는 동원 즉시 전투력 발휘에 한계가 있어, 연간 180일 이내 소집 훈련이 가능하도록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확대하게 되었음.

비상근 예비군 제도 시행을 위해 「예비군법」 일부 개정법률이 2021년 12월 7일에 공포되어, 2022년 3월 8일 시행 예정이며, 동 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그 밖에 비상근 예비군의 정원, 소집 분야, 소집 기간, 선발, 소집의 중단, 보상 등’의 시행령 조항을 신설하기위해 「예비군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소집분야는 단기 및 장기의 비상근 예비군의 직위로 구분하고

세부 직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나. 비상근 예비군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되, 단기 비상근 예비군 5,000명과 장기 비상근 예비군 700명 내에서 하도록 함.

- 다. 소집기간은 입영부대의 훈련계획에 따라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연간 30일 이내,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연간 30일 초과 180일 이내로 소집하도록 함.
- 라. 선발은 각 군 참모총장이 매년 그 다음 해의 비상근 예비군 선발 및 운용 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시행하도록 함.
- 마. 소집의 중단은 비상근 예비군이 질병 및 심신장애,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및 불성실 복무, 개인 사정 등으로 소집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입영부대의 장이 중단할 수 있도록 함.
- 바. 소집일수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함.
- 사. 비상근 예비군 복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2022.1.17.~2.11
3) 행정규제 : 규제 대상 없음.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31924호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조의2(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비상근 예비군의 직위는 전시 전투임무 발휘 보장을 위하여 단기 비상근 예비군 직위와 장기 비상근 예비군 직위로 구분하여 운용하며, 세부 직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② 비상근 예비군의 정원은 안보환경, 군구조 개편 정도, 상비병력의 연차적 조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되, 단기 비상근 예비군 5,000명과 장기 비상근 예비군 700명 내에서 한다.
- ③ 비상근 예비군의 소집기간은 입영부대의 훈련계획에 따라 소집하되,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연간 30일 이내로 소집하고,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연간 30일 초과 180일 이내로 소집한다.
- ④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그 다음 해의 비상근 예비군 선발 및 운용 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 ⑤ 입영부대의 장은 선발된 비상근 예비군이 질병 및 심신장애, 직무

수행능력의 부족 및 불성실 복무, 개인 사정 등으로 비상근 예비군 소집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의 중단을 할 수 있다.

⑥ 국방부장관은 비상근 예비군이 「병역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소집된 경우 소집일수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비를 지급한다.

⑦ 비상근 예비군 복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2. 3. 8.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통령령 제31924호 예비군법 시행령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대통령령 제31924호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의2(비상근 예비군 제도) ① <u>비상근 예비군의 직위는 전시 전투임무 발휘 보장을 위하여 단기 비상근 예비군 직위와 장기 비상근 예비군 직위로 구분하여 운용하며, 세부 직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u> ② <u>비상근 예비군의 정원은 안보 환경, 군구조 개편 정도, 상비병력의 연차적 조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되, 단기 비상근 예비군 5,000명과 장기 비상근 예비군 700명 내에서 한다.</u> ③ <u>비상근 예비군의 소집기간은 입영부대의 훈련계획에 따라 소집하되,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연간 30일 이내로 소집하고,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연간 30일 초과 180일 이내로 소집한다.</u>

<u><신 설></u>	④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그 다음 해의 비상근 예비군 선발 및 운 용 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 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u><신 설></u>	⑤ 입영부대의 장은 선발된 비상 근 예비군이 질병 및 심신장애,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및 불성실 복무, 개인 사정 등으로 비상근 예비군 소집을 감당할 수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의 중 단을 할 수 있다.
<u><신 설></u>	⑥ 국방부장관은 비상근 예비군이 「병역법」 제50조 제1항 단서 에 따라 소집된 경우 소집일수 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비를 지급한다.
<u><신 설></u>	⑦ 비상근 예비군 복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 한다.
<u><신 설></u>	이 영은 ‘22. 3. 8.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예비전력과	
연 락 처	(02) 748 - 5241